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0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과태료) 같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43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– 안 제43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,

- “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,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” 이 사항을 위반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